

수원지방법원 2022. 5. 12 선고 2021나87439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재판경과

수원지방법원 2022. 5. 12 선고 2021나87439 판결

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. 8. 20 선고 2020가단207498 판결

전문

원고, 피항소인 대한민국

피고, 항소인 A

변론종결 2022. 4. 7.

판결선고 2022. 5. 12.

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. 8. 20. 선고 2020가단207498 판결

주문

1.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1. 청구취지

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. 3. 18.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.

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제1,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가평등기소 2015. 3. 20. 접수 제6013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 및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홍천등기소 2015. 3. 20. 접수 제5186호로 마친 지분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2. 항소취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
이 유

1. 제1심판결의 인용

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피고가 주장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고, 피고의 주장과 제출 증거들을 다시 면밀히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.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기재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.

2. 결론

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,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
재판장 판사 이효진, 판사 이국현, 판사 김광진

별지 목록

1. [토지] 경기도 가평군 목장용지 4874㎡
 2. [토지] 경기도 가평군 임야 1377㎡
 3. [토지] 강원도 홍천군 임야 39868㎡
- 지분 2분의 1

- 이 하 이 텍 -

